

창업보육센터 운영 내규

제정 1998.10.16	개정 2002.02.16
	개정 2003.11.06
	개정 2005.12.01
	개정 2007.12.01
	개정 2008.12.01
	개정 2014.01.01
	개정 2015.01.01
	개정 2015.11.02.
	개정 2020.01.0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림대학교가 생물산업분야 및 IT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(이하 “보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재지) 이 보육센터는 한림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3 조 (사업) 보육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보육센터 운영
2. 입주자 모집 및 선정
3. 입주자 지원
4.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 4 조 (센터장) ① 이 보육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보육센터의 사무전반을 통할한다.

제 5 조 (사무조직) 이 보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실, 교육지원실, 기술지원실, 경영지원실 및 행정실을 둘 수 있으며, 행정실에는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 6 조 (위원회의 구분) 이 보육센터에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와 창업보육센터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7 조 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장, 행정지원처장, 기획처장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강원도, 춘천시 창업보육관련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방안
2. 입주자 모집방안
3. 입주자 지원방안
4. 예산 심의
5. 기타 사업 추진 상 필요한 사항

제 8 조 (자문위원회) ① 자문위원회는 교내 관련 교수 및 국내 전문가로 구성하며, 보육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입주절차 및 입주자 지원

제 9 조 (입주신청) 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입주자 선정 기준) 입주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1. 기업의 성공 가능성 및 사업성
2.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보유
3. 기대효과 (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)
4. 본 대학교 및 부설연구소들과의 협력가능성

제 11 조 (입주자 심사 및 선정) ① 센터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입주여부를 심사한다.

③ 유관기관 연계입주 시 가점 부여 할 수 있다.(3점)

- 유관기관: 창조경제혁신센터, 1인창조기업지원센터, 중장년기술창업센터, 청년창업사관학교 등

제 12 조 (입주기간 및 입주연장) ①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되, 총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② 단,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%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(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)

제 13 조 (계약체결) 입주계약의 당사자는 보육센터장과 입주예정자 (또는 입주업체 대표)로 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입주자 지원)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입주 공간, 교육 및 부대시설을 지원한다.

제 5 장 졸업 및 퇴거

제 15 조 (졸업) 입주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대상이 된다.

1.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
2. 입주자의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
3. 입주자의 종업원 수가 25명 이상이 되는 경우
4.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

제 16 조 (퇴거) 입주자가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대상이 된다.

1.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2. 센터의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3. 센터의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제 6 장 운영 · 관리

제 17 조 (실태조사)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년2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18 조 (특허) ① 입주자가 입주기간동안 개발한 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할 경우 보육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육센터의 지원으로 특허를 취득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배분은 보육센터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7 장 재 정

제 19 조 (운영비) 직원의 급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육센터가 확보한 자체운영비 및 대학지원금으로 운영하도록 한다.

제 20 조 (회계처리) 보육센터 입주자 및 퇴거자가 제공하는 기부금, 분담금 등은 별도로 계정 처리하여 보육센터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.

제 21 조 (회계연도) 이 보육센터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22 조 (예산 및 결산) 이 보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21 조 (규정변경)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세부사항)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이 내규는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개정내규는 200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개정내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이 개정내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이 개정내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이 개정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⑦ 이 개정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⑧ 이 개정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⑨ 이 개정내규는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